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88호 2012. 1. 6(금)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982호 사천시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983호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984호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	15
○ 사천시 조례 제985호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20
○ 사천시 조례 제986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사천시 조례 제987호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사천시 조례 제988호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26
○ 사천시 조례 제989호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04호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32
○ 사천시 규칙 제505호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	33

회 람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2)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52호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61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1-168호 향촌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65
- 사천시 고시 제2012-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89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2-22호 조례제정·개폐 및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 등 공표 90
- 사천시 공고 제2012-23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공표 92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98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 도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 조성과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영어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4)

-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수탁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정리, 도서관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강료 등) 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수수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면 사용일 또는 개강일 3일 전까지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은 수강을 신청한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5)

④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수강료 등은 도서관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

제23조를 제24조로, 제24조를 제25조로 각각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6)

[별표 1]

수강료 등(제17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배 우 실	1회 3시간 기준	20,000원

○ 기본 사용시간(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를 가산적용

2. 자료복사 및 인쇄

구 분	규 격	금액(1면당)	비 고
복 사 (전자복사기)	B5	20원	
	A4	30원	
	B4	40원	
	A3	50원	
인 쇄 (프린터기)	A4	30원	
	B4	40원	
	A3	50원	

3. 회원증 발급

구 분	금 액	기 준	비 고
회원증	무료	1회 1매	신규, 재발급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7)

4. 프로그램 수강료

단 위	수 강 시 간	금 액(원)	비 고
월	4시간 이하 프로그램 (초급)	10,000	○ 1인 1프로그램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 인 부담
	4시간 이하 프로그램 (중급)	30,000	
	8시간 이하 프로그램	60,000	

[별표 2]

수강료 반환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 고
학습자 본인의 요 청	1) 사용 또는 개강 전일	전 액 환 불	
	2)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3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70%	
	3)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2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50%	
	4)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2/3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30%	
	5)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2/3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외부 요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전액 환불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2) 본인명의로 통장 사본 3) 수강료 납부 영수증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8)

[별표 3]

도서회원증(제19조제2항 관련)

도서회원증

사진

성 명 :

회원번호 :

년 월 일

사천시 어린이 영어 도서관장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9)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 소 사 유				
환불 신청액	금	원정(금)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p>「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장 귀하</p>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수강료 납부영수증			없음

----- 결 취 선 -----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환불 결정액	원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p>「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장</p>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10)

사천시 조례 제98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주민자치학습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자치학습센터(이하 “자치학습센터”라 한다)”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로 하고, “주민자치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11)

제5조제1항제6호 중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를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 이웃돕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읍면동장” 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2항, 제15조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주민자치학습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항에 대하여” 를 “사항을”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12)

제20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제목 중 “주민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13)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기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수 강 료 (1인 기준 월)	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2시간 이하	10,000원 이하	교재·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생활체육 등	2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4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6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6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비율(제10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퍼센트	
등록장애인	100퍼센트	
국가유공자	100퍼센트	
그 밖에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14)

[별표 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반환기준(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10조 제4항 관련	수강료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 개시 전	- 수강 개시 전에 포기 신고자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징수 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수강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 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 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 산 한 금액
비 고		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15)

사천시 조례 제98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용현면 진삼로 447(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의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작업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16)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작업장의 위탁범위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을 기부채납 한 자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그 기부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의 경우도 포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도덕성,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수탁 협약체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의 위·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서 체결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
2.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 받은 자산 및 시설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17)

3.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에 직접 사용
4. 시설을 용도 전환하여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손·망실에 대한 변상책임
5.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시 시장의 사전 승인
6.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협약서 및 행정지시 사항 이행
7. 위탁기간의 만료나 위탁취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작업장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현저히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비) 작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기구와 인원을 구성하여야 하고, 시설장의 임면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장애인근로자) ① 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는 시에 거주하면서 등록이 된 법 다.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그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인근로자의 급여) 작업장 장애인근로자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18)

의하며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익금의 사용) ① 작업장의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작업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월별 정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3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작업장의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20)

사천시 조례 제98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사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21)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22)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근로자 상담) 시장은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 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23)

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24)

사천시 조례 제98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25)

사천시 조례 제98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26)

사천시 조례 제98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 및 국제노선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노선 및 국제노선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천공항을 이용한 신규노선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규모·시기·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27)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항공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28)

사천시 조례 제98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탁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를 “수탁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의료기관”을 “수탁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 중 “예방접종 당일”을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4일 이내 지급 한다(단, 신생아일 경우 30일 이내)”를 “14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질병관리본부로”를 “시장에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29)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읍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사 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	---------	----------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제5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

제6조	백신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예방접종(9종) <input type="checkbox"/> BCG(피내용)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input type="checkbox"/> DTaP <input type="checkbox"/> Td <input type="checkbox"/> 폴리오 <input type="checkbox"/> MMR <input type="checkbox"/> 수두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사백신) <input type="checkbox"/> DTaP-IPV
-----	------	---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사 천 시
대표자 : 사천시장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30)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31)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제 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9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Td 폴리오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DTaP-IPV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32)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0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상공인 다음에 “농어업인”을 추가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기획담당을 간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33)

사천시 규칙 제50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34)

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1.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차량의 용도변경) 시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차량정수관리

제1절 차량 정수배정의 절차 및 기준 등

제6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용도변경승인·규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35)

제7조(정수배정) 시장은 각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한다.

제8조(정수배정 제한)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필요에 따라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9조(정수번호 부여) 시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는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용도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규모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조(차량교체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부서는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36)

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차량의 구매) 단위부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시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는 차량 총괄부서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9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는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20조(정수대장 정비 등) 단위부서는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8월 말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37)

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차량의 등록관리

제21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부서에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에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는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등록말소할 차량을 승인확인서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서는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22조(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단위부서 보유 차량의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전용·업무용 차량을 공동배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에 차량 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38)

제24조(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에서는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는 제1호에 따른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단위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같은 서식 제2호부터 5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현황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제28조(차고운영)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원 대기실을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팀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팀장은 차량 총괄부서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39)

차량 운전원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장 운전원 관리

제30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40)

13. 불법 주·정차 행위

제32조(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4조(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차량의 직접 운전

제36조(차량의 직접 운전)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임무 등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차량의 점검)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41)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차량의 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 관리부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사천시 관용차량관리규칙」에 따라 정수를 배정 받아 구입 중이거나 교체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배정·구입 교체된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차형 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42)

[별표 1]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 (제4조 관련)

용 도	규 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이2,000cc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시장 · 시의회의장 · 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 시 본청 · 시 의회	
	중형승용차 (배기량이1,6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차량을 말 한다. 이하 같다)	· 시 본청 · 시 의회	
승 용 (업무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 시 본청	
	중형승용차 (배기량이1,600cc 이상 2,000cc미만)	· 시 본청 · 시 의회	
	소형승용차(배기량이1,000 cc이상 1,500cc 미만의 차 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다목적형승용차	○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배기량이1,0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 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 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소형승합차(승차정원 이 15 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경형승합차(배기량 8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43)

용 도	규 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 초과 10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경형화물차(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특수용	청소차	○ 단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km
	구급차	○ 단위부서	
	분뇨차	○ 단위부서	
	진료차	○ 단위부서	
	이동수리차	○ 단위부서	
	트럭트랙터	○ 단위부서	
	트레일러	○ 단위부서	
	택카차	○ 단위부서	
그 밖의 특수차	○ 단위부서		

※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44)

[별표 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제9조 관련)

1. 용도별 · 규모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비 고
승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다목적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차 · 엠블런스 · 교통약자 · 산불방제 · 미세분무 · 이동목욕 · 방역 · 가축방역 · 농기계수리 · 그 밖에 특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사천시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사천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경남 - 가 2 - 10

②사천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경남 - 다 1 - 3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46)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1. 「사천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규모)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용도(현 규모)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용도	③ 규모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용도	③ 규모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⑩ 비 고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47)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사천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용도	③ 규모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용도	③ 규모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⑨ 비 고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48)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 교환승인 요청

1. 「사천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① 규 모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차 대 번호	⑤ 등 록 번호	현 재		변 경		⑩ 비 고
					⑥ 차 량 소속기관	⑦ 사 용 부 서	⑧ 차 량 소속기관	⑨ 사 용 부 서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49)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 배정
 용도 변경승인
 규모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확인서 송부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등 록 할 차 량		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	차량의표시	구 분	차량의표시
① 차량소속기관		⑧ 차량소속기관	
② 규 모		⑨ 규 모	
③ 차 명	()	⑩ 차 명	()
④ 연 식		⑪ 연 식	
⑤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비과세대상차량구분		⑫ 기 관 번 호	
⑥ 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	자 : 지 :	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		⑭ 비 고	

※처리요령

-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50)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교환승인확인서송부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구 분	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규 모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51)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통고

1. 「사천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통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기 관 번호	⑥ 등 록 번호	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일자	⑧ 비 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52)

[별지 제8호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사 천 시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일련 번호	정수 번호	승 인		차 명	연식	승차정원 적재정량	소속 기관	용 도	담당자 (인)	비 고
		문서번호	일자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54)

[별지 제9호서식]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	담당자	담당	과장	결재
사용일시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외 명			
자가 운전시 (운전자)		차량번호		
<p>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용 부서장 (인)</p> <p>회계과장 귀하</p>				
<p>※ 사용하기 5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번호		운 전 원	
배차일시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유 류		운행거리	Km
<p>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회계과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p>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57)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 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 ③ 에어클리너는 ?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2) 운행 중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		
3) 운행 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 ⑦ 열쇠보관은 ?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58)

[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현 황 관 리 카 드

차 량 소 속 부 서		사 용 부 서	
차 량 정 수 번 호		정 수 삭 제 일 자	
승 인 문 서 번 호		승 인 일 자	
용 도		규 모	
차 명			
승 차 정 원 (규 격)		적 채 정 량 (규 격)	
배 기 량 (규 격)		연 식 (연 도)	
취 득 구 분		차 대 번 호	
용 도			
차 량 구 입 비		유 류 종 류	
비 고			
차 량 등 록 여 부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처 분 일 자	
		배 차 가 능 여 부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59)

[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용도·규모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용도별	규모별	차명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 호	일 자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용도·규모변경) 사유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60)

※ 작성요령

-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⑥ 용도·규모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⑦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 1)
- 2)
- 3)

마. 예산소요 판단

- 1) 총 소요예산 : 천원
- 2) 차량 구입비 : 천원
-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연간 기준)
- 4) 차량 유지비 : 천원(연간 기준)

바 그 밖의 참고사항

사. 차량 운행수요

출장업무명	차량운행		승차인원			비고
	횟수	거리	연간	월간	1일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61)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52호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4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9조제1항 중 “병가”를 “유급병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의사 진단서”를 “2차 진료기관(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또는 사천시 보건소의 진단서”로 한다.

제3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다만,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예외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하고, “57세”를 “60세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시 근무상한연령은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62)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2012년1월1일부터 58세로 하고, 매2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16년1월1일부터 60세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63)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제6조제3항 관련)

1. 행정사무원·단순노무원·도로보수원·환경미화원의 정수

부 서 별	계	행 정 사무원 ①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⑥	환 경 미화원 ⑦
			소 계	시 설 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②	현장지도 단속감시 상담인부 ③	자 격 을 하 는 인 부 ④	안 내 매 표 단 순 조 역 인 부 ⑤		
총 계	181	0	83	42	8	13	20	20	78
본 청	소 계	68	48	17	8	5	18	20	
	총 무 과	10	10				10		
	정보법무과	1					1		
	주민생활지원과	2	2			1	1		
	사회복지과	4	4	4					
	문화관광과	6	6	6					
	체육지원과	9	9			4	5		
	건 설 과	1	1	1					
	재난관리과	1	1	1					
	도로교통과	24	4		4			20	
	녹지공원과	9	9	5	4				
의회사무국	1	1				1			
직 속 기 관	소 계	14	14	4		9	1		
	보 건 소	5	5			5			
	농업기술센터	9	9	4		4	1		
사 업 소	소 계	98	20	20					78
	하수도사업소	20	20	20					
	환경사업소	78							78
출 장 소	소 계	1	1	1					
	신수출장소	1	1	1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64)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34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65)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1-168호

향촌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향촌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1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9조, 제23조의 규정과 같은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I. 농공단지 지정(변경)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계재생략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계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9. 3. ~ 2011. 12. 31 (34개월)

변경 2009. 3. ~ 2012. 12. 31 (46개월)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인 삼호조선 주식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및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개발기간 연장

○ 개발방법 : 민간개발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66)

-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8. 추정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

가. 사업비내용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합 계	553.4	
단 지 조 성 비	365.4	(진입도로40억원포함)
토 지 매 입 비	132.0	
지 장 물 보 상 비	54.0	
기 타 부 대 비	2.0	

나. 자금조달계획

- 기 정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년차별 투자계획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55,340	5,000	5,000	22,300	16,700	6,340	
지방비	4,000	-	-	2,300	1,700	-	
보조(진입도로)	4,000	-	-	2,300	1,700	-	
삼호조선주식회사	51,340	5,000	5,000	20,000	15,000	6,340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67)

○ 변경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년차별 투자계획						비 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55,340	5,000	5,000	22,300	9,200	7,500	6,340	
지방비	4,000	-	-	2,300	1,700	-	-	
보조(진입도로)	4,000	-	-	2,300	1,700	-	-	
삼호조선주식회사	51,340	5,000	5,000	20,000	7,500	7,500	6,340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인 삼호조선 주식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및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개발기간 연장

9. 편입토지조서 (변경)

- 붙임 참조

II. 실시계획(변경)승인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

○ 성명 : 기 정 - 삼호조선주식회사 대표자 임문규

변 경 - 삼호조선주식회사 관리인 임문규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인 삼호조선 주식회사의 기업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직위변경

○ 주소 :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농업유휴인력 및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68)

○ 기업수요에 맞는 공장용지 적기공급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농공단지조성면적 : 260,040m²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 215번지 일원

○ 면적 : 260,040m²(육지부166,485 + 해면부93,555)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사업시행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 개발)

○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09년 3월 ~ 2011년 12월까지 (34개월)

변경 2009년 3월 ~ 2012년 12월까지 (46개월)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인 삼호조선 주식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및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개발기간 연장

6.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60,040	-	260,040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6,806		56,806	21.9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90,075		190,075	73.1	
	준공업지역	13,159		13,159	5.0	
미지정 지역		-		-	-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69)

7. 도시관리계획결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 구역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향촌농공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215번지 일원	260,040		260,040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60,040		260,040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6,806		56,806	21.9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90,075		190,075	73.1	
	준공업지역	13,159		13,159	5.0	
미지정 지역		-		-	-	

다. 기반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15	25	보조간선도로	230	4호광장	향촌동 산15-10	일반도로	-	2009.3. 20	
기정	중로	2	23	17	집산도로	475	대로 3-15호선	사등동 산57	일반도로	-	2009.3. 20	
기정	중로	2	24	17	집산도로	242	중로 2-23호선	향촌동 660-3	일반도로	-	2009.3. 20	
기정	소로	3	146	4	국지도로	190	중로 2-24호선	향촌동 668	일반도로	-	2009.3. 20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70)

2) 녹지

가)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개소		38,859		38,859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산15-3번지	9,475		9,475	2009.3.20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669-1번지	4,424		4,424	2009.3.20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사등동 51-1번지	20,076		20,076	2009.3.20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655-1번지	1,605		1,605	2009.3.20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산14-4번지	76		76	2009.3.20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사등동 230번지	1,474		1,474	2009.3.20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사등동 225-4번지	1,729		1,729	2009.3.20	

3)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4,767	-	4,767	-	
기정	6	노외주차장	향촌동 산54-2일원	4,767	-	4,767	2009.3.20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71)

4)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2,951		2,951	-	
기정	3	하수종말 처리장	향촌동 669-1일원	2,951		2,951	2009.3.20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0,040			260,040		260,040		
-	I	183,921	1	사천시 사등동 235번지 일원	183,921		183,921	산업시설용지	
	II	8,392	1	사천시 사등동 산22-9번지 일원	8,392		8,392	지원시설용지	
	III		21,150	1	사천시 사등동 산54-2번지 일원	21,150		21,150	도로
			4,767	2	사천시 사등동 231번지 일원	4,767		4,767	주차장
			2,951	3	사천시 사등동 669-1번지 일원	2,951		2,951	하수종말처리장
			76	4	사천시 향촌동 산14-4번지 일원	76		76	녹지
			9,475	5	사천시 향촌동 산15-3번지 일원	9,475		9,475	녹지
			20,076	6	사천시 사등동 51-1번지 일원	20,076		20,076	녹지
			1,605	7	사천시 향촌동 655-1번지 일원	1,605		1,605	녹지
			4,424	8	사천시 향촌동 669-1번지 일원	4,424		4,424	녹지
	1,474	9	사천시 사등동 230번지 일원	1,474		1,474	녹지		
	1,729	10	사천시 사등동 225-4번지 일원	1,729		1,729	녹지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72)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1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3조의4 별표1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9차개정 2008.2.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최고높이	5층이하
		배 치	건물의 형태 및 배치는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색 채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권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1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3조의4 별표1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최고높이	5층이하
		배 치	건물의 형태 및 배치는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색채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권장)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73)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9. 관련도서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류」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관련도서는 사천시
청 공단조성과(055 - 831 - 346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74)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 2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주차장, 하수종말처리장)사업
 - 명 칭 :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총면적 67,727㎡(도로 21,150㎡, 녹지 38,859㎡, 주차장 4,767㎡, 하수종말처리장 2,951㎡)
 - 시설규모
 - ◎. 도로

구분	결 정 규 모					시 행 규 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기점	종점	연장(m)	
도로	대로	3	15	25	230	4호광장	향촌동 산15-10	230	
	중로	2	23	17	475	대로 3-15호선	사등동 산57	475	
	중로	2	24	17	242	중로 2-23호선	향촌동 660-3	242	
	소로	3	146	4	190	중로 2-24호선	향촌동 668	190	

◎. 기타 기반시설

구분	결 정 규 모			시 행 규 모		비고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녹지	완충 녹지	향촌동 산15-3번지	9,475	향촌동 산15-3번지	9,475	
녹지	완충 녹지	향촌동 669-1번지	4,424	향촌동 669-1번지	4,424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51-1번지	20,076	사등동 51-1번지	20,076	
녹지	완충 녹지	향촌동 655-1번지	1,605	향촌동 655-1번지	1,605	
녹지	완충 녹지	향촌동 산14-4번지	76	향촌동 산14-4번지	76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230번지	1,474	사등동 230번지	1,474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225-4번지	1,729	사등동 225-4번지	1,729	
노외 주차장		향촌동 산54-2일원	4,767	향촌동 산54-2일원	4,767	
하수종말처리장		향촌동 669-1일원	2,951	향촌동 669-1일원	2,951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75)

4. 사업시행자 주소·성명(변경)

○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459-6번지

○ 성 명 : 기 정 - 삼호조선(주) 대표 임 문 규

변경 - 삼호조선(주) 관리인 임 문 규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인 삼호조선 주식회사의 기업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직위변경

5. 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변경)

○ 당 초 : 2009. 03. ~ 2011. 12. 31

○ 변 경 : 2009. 03. ~ 2012. 12. 31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인 삼호조선 주식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및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개발기간 연장

6.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억원)

사 업 명	합계	국. 도비	시비	자기자본	비고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	553.4		40	513.4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참조

8. 관계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전 시 영 편

제288호(76)

편입토지 조세

번호	소재지	지번		자목	지권면적 (㎡)	권용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자린시 지등동	208		전	245	245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2	자린시 지등동	209	1	전	116	116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3	자린시 지등동	209		전	119	119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4	자린시 지등동	210	1	전	694	694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5	자린시 지등동	210	2	전	340	340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6	자린시 지등동	210		전	126	126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7	자린시 지등동	211	1	광	1,614	1,614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8	자린시 지등동	211	2	대	362	362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9	자린시 지등동	211	3	대	370	370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10	자린시 지등동	211		광	2,927	2,927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11	자린시 지등동	213		임	374	374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12	자린시 지등동	214	1	광	1,653	1,653	김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저당	

사 전 시 예 표

제288호(77)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권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적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3	사천시 차등동	214	2	광	977	977	박광태	경남 진주시 초전동 149-9 정구아파트102-401	복합공동조합 중앙회	서문특별시 중구 중정로가 75	근저당 지상권	
14	사천시 차등동	214		광	1,684	1,684	김연옥	경남 통영시 광도면 옥림리 1279 동명주택1차부르지 오 112동 202호	복합공동조합 중앙회	서문특별시 중구 중정로가 75	근저당 지상권	
15	사천시 차등동	215		광	2,290	2,290	김연옥	경남 통영시 광도면 옥림리 1279 동명주택1차부르지 오 112동 202호	복합공동조합 중앙회	서문특별시 중구 중정로가 75	근저당 지상권	
16	사천시 차등동	216		광	3,005	3,005	박광태	경남 진주시 초전동 149-9 정구아파트102-401	복합공동조합 중앙회	서문특별시 중구 중정로가 75	근저당 지상권	
17	사천시 차등동	217	1	담	2,616	2,616	삼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천시석전동 246-1	근저당	
18	사천시 차등동	217	2	광	4,347	4,347	삼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천시석전동 246-1	근저당	
19	사천시 차등동	217	3	담	1,284	1,284	삼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천시석전동 246-1	근저당	
20	사천시 차등동	217	4	담	1,214	1,214	삼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천시석전동 246-1	근저당	
21	사천시 차등동	218		담	2,212	2,212	삼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천시석전동 246-1	근저당	
22	사천시 차등동	219		담	4,165	4,165	삼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천시석전동 246-1	근저당	
23	사천시 차등동	220		담	3,855	3,855	삼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천시석전동 246-1	근저당	

사 전 시 영 편

제288호(7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자연면적 (㎡)	건물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4	사천시 사등동	221	1	대	414	414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25	사천시 사등동	221	2	권	1,656	1,656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26	사천시 사등동	221	3	대	218	218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27	사천시 사등동	221	4	대	231	231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28	사천시 사등동	223		권	813	813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29	사천시 사등동	224		권	274	274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30	사천시 사등동	225	1	대	132	132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31	사천시 사등동	225	2	대	469	469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32	사천시 사등동	225	3	대	830	830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33	사천시 사등동	225	4	권	142	142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34	사천시 사등동	225	5	권	152	152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35	사천시 사등동	226	1	권	347	347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36	사천시 사등동	226	2	권	139	139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37	사천시 사등동	226		대	261	261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38	사천시 사등동	227	1	권	169	169	삼호조선헌우식회사	경남 등명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사 전 시 영 편

제288호(7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자력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39	사천시 사등동	227	2	전	721	721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40	사천시 사등동	227	3	전	394	394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41	사천시 사등동	227	4	전	149	149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42	사천시 사등동	227	5	전	179	179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43	사천시 사등동	227	6	전	274	274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44	사천시 사등동	227	7	전	364	364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45	사천시 사등동	227	8	전	122	122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46	사천시 사등동	227	9	전	661	661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사천시 사등동 227-9	경남은행	-	-	-	
47	사천시 사등동	227	10	전	212	212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48	사천시 사등동	227	11	전	139	139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49	사천시 사등동	227	12	광	1,390	1,390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50	사천시 사등동	227	13	광	2,534	2,534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51	사천시 사등동	227		전	737	737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52	사천시 사등동	228		답	231	231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53	사천시 사등동	229		전	833	833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 동명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경남마린시책전동 246-1	근제당	

사 진 시 예

제288호(80)

번호	소재지	지 법		지 목	자력면적 (㎡)	권물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54	사천시 사들동	230		권	764	764	심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산시석전동 246-1	근저당		
55	사천시 사들동	231		광	8,060	8,060	심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산시석전동 246-1	근저당		
56	사천시 사들동	233	2	대	13	13	박종필	경남 사천시 동금동 303-3 한우비치편선 1107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회	서물특별시 중구 중정로2가 75	근저당 지상권		
57	사천시 사들동	234	2	광	631	631	박종필	경남 사천시 동금동 303-3 한우비치편선 1107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회	서물특별시 중구 중정로2가 75	근저당 지상권		
58	사천시 사들동	234	3	도	80	80	심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산시석전동 246-1	근저당		
59	사천시 사들동	235	2	광	1,041	1,041	박종필	경남 사천시 동금동 303-3 한우비치편선 1107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회	서물특별시 중구 중정로2가 75	근저당 지상권		
60	사천시 사들동	236		광	1,174	1,174	박종필	경남 사천시 동금동 303-3 한우비치편선 1107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회	서물특별시 중구 중정로2가 75	근저당 지상권		
61	사천시 사들동	237		광	1,269	1,269	박종필	경남 사천시 동금동 303-3 한우비치편선 1107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회	서물특별시 중구 중정로2가 75	근저당 지상권		
62	사천시 사들동	238	1	광	1,023	1,023	심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산시석전동 246-1	근저당		
63	사천시 사들동	238		권	987	987	심호조선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마산시석전동 246-1	근저당		
64	사천시 사들동	244		도	109	109	국(국토해양부)	-	-	-	-		
65	사천시 사들동	253		도	337	337	국(국토해양부)	-	-	-	-		

사 전 시 영 편

제288호(81)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자력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66	사천시 차등동	254		도	1,190	1,190	국(국토해양부)	-	-	-	-	-
67	사천시 차등동	255	1	구	3,917	3,917	국(국토해양부)	-	-	-	-	-
68	사천시 차등동	256		구	1,240	1,240	국(국토해양부)	-	-	-	-	-
69	사천시 차등동	신99	4	임	297	297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70	사천시 차등동	신99	5	임	824	824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71	사천시 차등동	신99	3	임	4,519	4,519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72	사천시 차등동	신99	11	임	1,922	1,922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73	사천시 차등동	신99	13	임	11	11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74	사천시 차등동	신99	14	임	919	919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75	사천시 차등동	신99	2	임	496	496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76	사천시 차등동	신99	15	임	1,713	1,713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77	사천시 차등동	신99	16	임	4,044	4,044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78	사천시 차등동	신99	17	임	215	215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79	사천시 차등동	신99	7	임	992	992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80	사천시 차등동	신99	9	임	10,289	10,289	삼호조선우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사 전 시 영 편

제288호(8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자적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1	사천시 사등동	신54	2	임	4,066	4,066	삼호조선투신구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산시석전동 246-1	근저당	
82	사천시 사등동	신54	6	임	353	353	삼호조선투신구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산시석전동 246-1	근저당	
83	사천시 사등동	신54	8	임	809	809	삼호조선투신구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산시석전동 246-1	근저당	
84	사천시 사등동	신54	9	임	1,875	1,875	삼호조선투신구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산시석전동 246-1	근저당	
85	사천시 사등동	신54	10	임	848	848	삼호조선투신구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산시석전동 246-1	근저당	
86	사천시 사등동	신54	11	임	4,044	4,044	삼호조선투신구식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산시석전동 246-1	근저당	
87	사천시 사등동	신57	1	도	295	295	국(국토해양부)	-	-	-	-	
88	사천시 사등동	신58		도	99	99	국(국토해양부)	-	-	-	-	
89	사천시 향곡동	543	1	도	10	10	국(국토해양부)	-	-	-	-	
90	사천시 향곡동	543	2	건	816	816	사천시	-	-	-	-	
91	사천시 향곡동	543	3	도	50	50	사천시	-	-	-	-	
92	사천시 향곡동	544	1	건	149	111	관객오	경남 통영시 무전동 366-129 유명산마을901호 101-700	-	-	-	
93	사천시 향곡동	544	2	건	448	223	취득임	사천시 서곡동 8-4	진주시부농명 명동조합	경남진주시 명곡동 24-1	근저당	

사 전 시 영 편

제288호(83)

번호	소재지	지 번		자목	자력면적 (㎡)	권물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94	사천시 향곡동	544	3	권	53	53	사천시	-	-	-	-	-	-
95	사천시 향곡동	544	4	권	21	21	사천시	-	-	-	-	-	-
96	사천시 향곡동	545	1	권	73	61	최경숙	간해시 이동 855-1	-	-	-	-	-
97	사천시 향곡동	545	2	권	306	229	최경숙	간해시 이동 855-1	-	-	-	-	-
98	사천시 향곡동	545	3	도	84	84	사천시	-	-	-	-	-	-
99	사천시 향곡동	545	4	권	3	3	사천시	-	-	-	-	-	-
100	사천시 향곡동	545	5	권	10	10	사천시	-	-	-	-	-	-
101	사천시 향곡동	546		권	37	37	사천시	-	-	-	-	-	-
102	사천시 향곡동	561	5	도	284	214	사천시	-	-	-	-	-	-
103	사천시 향곡동	563	2	도	158	4	국(국토해양부)	-	-	-	-	-	-
104	사천시 향곡동	564	3	권	18	18	김태민	사천시 향곡동 884-3	-	-	-	-	-
105	사천시 향곡동	564	4	권	22	21	김태민	사천시 향곡동 884-3	-	-	-	-	-
106	사천시 향곡동	565	2	도	4	2	국(국토해양부)	-	-	-	-	-	-
107	사천시 향곡동	565		권	340	4	국(기획재정부)	-	-	-	-	-	-
108	사천시 향곡동	619	7	권	559	559	사천시	-	-	-	-	-	-

사 전 시 영 편

제288호(84)

번호	소재지	지 번		자목	지적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09	사천시 향곡동	619	9	권	13	13	사천시	-	-	-	-	-	-
110	사천시 향곡동	621	9	권	489	489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창원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민지석전동 246-1	경남민지석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111	사천시 향곡동	655	1	권	500	500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창원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민지석전동 246-1	경남민지석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112	사천시 향곡동	655	2	권	195	195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창원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민지석전동 246-1	경남민지석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113	사천시 향곡동	657	1	권	60	60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창원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민지석전동 246-1	경남민지석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114	사천시 향곡동	658	1	권	105	105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창원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민지석전동 246-1	경남민지석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115	사천시 향곡동	659	1	권	39	39	사천시	-	-	-	-	-	-
116	사천시 향곡동	659	2	권	279	279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창원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민지석전동 246-1	경남민지석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117	사천시 향곡동	660	4	권	73	73	사천시	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곡리 501	-	-	-	-	-
118	사천시 향곡동	661	1	권	39	39	사천시	-	-	-	-	-	-
119	사천시 향곡동	661		권	470	470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창원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민지석전동 246-1	경남민지석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120	사천시 향곡동	662	1	권	1,640	1,640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창원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민지석전동 246-1	경남민지석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121	사천시 향곡동	662	2	권	711	711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창원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민지석전동 246-1	경남민지석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122	사천시 향곡동	662		권	347	347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창원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민지석전동 246-1	경남민지석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123	사천시 향곡동	663	1	임	512	512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창원시 도남동 489-6	경남은행	경남민지석전동 246-1	경남민지석전동 246-1	근저당	근저당

사 전 시 영 편

제288호(8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자전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24	사천시 향곡동	663	2	민	1203	1,203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125	사천시 향곡동	664	1	권	9	9	사천시	-	-	-	-		
126	사천시 향곡동	664	2	권	41	41	사천시	-	-	-	-		
127	사천시 향곡동	664		권	291	291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128	사천시 향곡동	665	1	권	164	164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129	사천시 향곡동	665	2	권	609	609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130	사천시 향곡동	665	3	권	94	94	사천시	-	-	-	-		
131	사천시 향곡동	665	4	권	15	15	사천시	-	-	-	-		
132	사천시 향곡동	665	5	권	17	17	사천시	-	-	-	-		
133	사천시 향곡동	665		권	772	772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134	사천시 향곡동	666	1	대	194	194	비공공	경남 사천시 동금동 393-3 한류비치먼트 110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공약회	서남특별시 중구 충정로 75	근저당 지상권		
135	사천시 향곡동	666	2	상	5,004	5,004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136	사천시 향곡동	666	3	감	6,119	6,119	삼호조선투신회사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	경남은행	경남매진시책전동 246-1	근저당		

사 전 시 행 단

제288호(86)

번호	소재지	거리		의속	면적 (㎡)	전용면적 (㎡)	소유리		소유권 미외의 권리관계			비고
		종면	부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37	시원시 임촌동	666	4	데	303	303	시원시	
138	시원시 임촌동	666	5	장	170	170	시원시	
139	시원시 임촌동	666		데	2350	2350	비관정	경남 시원시 동문동 320-3 안주비키네상 1107	농업진흥조항 중립회	서송폭발시중구 충검포1의 75	.	근거리 취업권
140	시원시 임촌동	667		데	119	119	비관정	경남 시원시 동문동 320-3 안주비키네상 1107	농업진흥조항 중립회	서송폭발시중구 충검포1의 75	.	근거리 취업권
141	시원시 임촌동	668	1	전	741	741	상호조민주의회사	경남 창원시 도림동 489-6	경남은행	창남미신사의관중 248-1	.	근거리
142	시원시 임촌동	668	4	당	222	222	국(국토해양부)	
143	시원시 임촌동	668	5	포	303	303	국(국토해양부)	
144	시원시 임촌동	669	1	계	169	169	국(국토해양부)	
145	시원시 임촌동	669	2	계	404	404	국(국토해양부)	
146	시원시 임촌동	1269	13	구	26101	402	시원농의계정조합	시원읍 유곡리 157-1
147	시원시 임촌동	1269		포	1160	99	국(국토해양부)
148	시원시 임촌동	1273	2	포	378	378	국(국토해양부)
149	시원시 임촌동	1274		구	556	556	상호조민주의회사	경남 창원시 도림동 489-6	경남은행	창남미신사의관중 248-1	.	근거리

사 전 시 영 편

제288호(87)

번호	소재지	거리		지속	거리영역 (㎡)	권유영역 (㎡)	소유리		소유권 미역외 권리영역			비고
		구면	부면				성역	주소	성역	주소	권리 관계	
150	시원시 일관중	신14	1	영	1,081	140	국(리로 계약부)
151	시원시 일관중	신14	2	영	1,285	286	국(제정부)
152	시원시 일관중	신14	3	포	98	90	국(리로 계약부)
153	시원시 일관중	신14	5	영	282	209	국(리로 계약부)
154	시원시 일관중	신14	6	영	6,258	6,258	시원시
155	시원시 일관중	신15	2	영	592	150	국(정교)	경남 풍암시 부원동 255-128 주영안시영외(지도 101-703)
156	시원시 일관중	신15	3	영	10,978	108	김해시 2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갈매동 128 상학마을 328-1101	진관서부출영 영종조합	경남진주시 유곡동 287-4	.	근거리
157	시원시 일관중	신15	10	영	486	486	시원시
158	시원시 일관중	신15	12	포	102	90	시원시
159	시원시 일관중	신15	13	포	351	328	시원시
160	시원시 일관중	신15	14	영	319	319	시원시
161	시원시 일관중	신15	15	영	3,507	3,507	시원시
162	시원시 일관중	신22	6	영	1,425	1,425	김해시 도동동 439-6	경남 창원시 도동동 439-6	창남은행	경남마산시상관중 245-1	.	근거리
163	시원시 일관중	신22	7	영	28	28	시원시

사 전 시 영 편

제288호(88)

번호	소재지	거리		적육	거리영리 (㎡)	권유영리 (㎡)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영세		비고
		본면	부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64	시원시 임관동	신22	8	영	109	109	시원시
165	시원시 임관동	신22	9	영	7919	7919	경남 풍영시 도남동 439-6	경남은혜	경남미신시의결중 245-1	경남미신시의결중 245-1	근거리
166	시원시 임관동	신23	4	영	45	45	시원시
167	시원시 임관동	신23	5	영	442	442	상호조선훈주목회사	경남 풍영시 도남동 439-6	경남은혜	경남미신시의결중 245-1	근거리
168	시원시 임관동	신24	7	영	437	437	상호조선훈주목회사	경남 풍영시 도남동 439-6	경남은혜	경남미신시의결중 245-1	근거리
169	시원시 임관동	신24	8	영	753	753	상호조선훈주목회사	경남 풍영시 도남동 439-6	경남은혜	경남미신시의결중 245-1	근거리
170	시원시 임관동	신24	9	영	33	33	시원시
171	시원시 임관동	신24	10	영	1351	1351	상호조선훈주목회사	경남 풍영시 도남동 439-6	경남은혜	경남미신시의결중 245-1	근거리
172	시원시 임관동	신24	11	영	2	2	상호조선훈주목회사	경남 풍영시 도남동 439-6	경남은혜	경남미신시의결중 245-1	근거리
173	시원시 임관동	신22	15	영	136	136	상호조선훈주목회사	경남 풍영시 도남동 439-6	경남은혜	경남미신시의결중 245-1	근거리
174	시원시 임관동	신22	16	영	947	947	상호조선훈주목회사	경남 풍영시 도남동 439-6	경남은혜	경남미신시의결중 245-1	근거리
175	시원시 임관동	기타		경	113	113	상호조선훈주목회사	경남 풍영시 도남동 439-6	경남은혜	경남미신시의결중 245-1	근거리
					권유수면						
					207570						
					93,556						
					260,040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89)

사천시 고시 제2012-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09-1호
2. 점용·사용 승인 년월일 : 2009. 11. 6.
3. 점용·사용의 목적
 -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해저케이블 매설 및 어로활동 지원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신수동 60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내역
 - 해저케이블 매설 : 47m²
- 192m × 0.245m
6. 공사기간
 - 2009. 12. 3. ~ 2011. 12. 27.
7. 점용·사용 승인(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지역경제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12. 1. 2.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90)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2-22호

조례제정·개폐 및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 등 공포

지방자치법 제15조의1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다 음 -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	비 고
	90,722명	1,815명	

2012년 1월 5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91)

주민 조례제정·개폐 및 주민투표 청구에 따른 주민수 등 현황

(2011.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주민투표권자총수 (19세이거권결격자제외)					선거 권이 없는 주민 수	연서(서명)주민수		
	계	주 민 등록자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 인	외국인 (영주의체류 자격취득후 3년경과자)		조례제정 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
계	90,781	90,710	45	26	12	435	90,767	90,781	90,722
읍면소계	9,075	49,045	14	16	6	194	주민 총수의 50분의1	주민 총수의 9분의1	49,051
가선거구	6,812	36,785	14	13	5	147			36,790
사천읍	12,854	12,840	6	8	4	56			12,844
정동면	8,608	8,606	1	1	-	37			8,606
사남면	8,595	8,588	4	3	1	25			8,589
용현면	6,755	6,751	3	1	-	29			6,751
나선거구	12,263	12,260	-	3	1	47			12,261
축동면	1,869	1,868	-	1	-	10			1,868
곤양면	3,708	3,707	-	1	-	14			3,707
곤명면	2,940	2,940	-	-	-	13			2,940
서포면	3,746	3,745	-	1	1	10			3,746
동소계	41,706	41,665	31	10	6	241			41,671
다선거구	18,180	18,161	14	5	3	129			18,164
동서동	7,522	7,509	9	4	2	55			7,511
선구동	5,574	5,570	4	-	-	34			5,570
동서금동	5,084	5,082	1	1	1	40			5,083
라선거구	23,526	23,504	17	5	3	112			23,507
별용동	12,666	12,653	11	2	1	58			12,654
향촌동	5,929	5,925	2	2	2	20			5,927
남양동	4,931	4,926	4	1	-	34			4,926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92)

사천시 공고 제2012-23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구 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	주민투표 청구시 연서 주민수	비 고
	90,781명	10,087명	

2012년 1.월 5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288호(93)

주민 조례제정·개폐 및 주민투표 청구에 따른 주민수 등 현황

(2011.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주민투표권자총수 (19세이거권결격자제외)					선거 권이 없는 주민 수	연서(서명)주민수		
	계	주 민 등록자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 인	외국인 (영주의체 류 자격취득후 3년경과자)		조례제정 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
계	90,781	90,710	45	26	12	435	90,767	90,781	90,722
읍면소계	9,075	49,045	14	16	6	194	주민 총수의 50분의1	주민 총수의 9분의1	49,051
가선거구	6,812	36,785	14	13	5	147			36,790
사천읍	12,854	12,840	6	8	4	56			12,844
정동면	8,608	8,606	1	1	-	37			8,606
사남면	8,595	8,588	4	3	1	25			8,589
용현면	6,755	6,751	3	1	-	29			6,751
나선거구	12,263	12,260	-	3	1	47			12,261
축동면	1,869	1,868	-	1	-	10			1,868
곤양면	3,708	3,707	-	1	-	14			3,707
곤명면	2,940	2,940	-	-	-	13			2,940
서포면	3,746	3,745	-	1	1	10			3,746
동소계	41,706	41,665	31	10	6	241			41,671
다선거구	18,180	18,161	14	5	3	129			18,164
동서동	7,522	7,509	9	4	2	55			7,511
선구동	5,574	5,570	4	-	-	34			5,570
동서금동	5,084	5,082	1	1	1	40			5,083
라선거구	23,526	23,504	17	5	3	112			23,507
별용동	12,666	12,653	11	2	1	58			12,654
향촌동	5,929	5,925	2	2	2	20			5,927
남양동	4,931	4,926	4	1	-	34			4,926